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8년 7월 24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장 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093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2다목 중 “양도”를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 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일 것[제1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1호의3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추가과세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정하여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7월 24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장 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093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1년”을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항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